

1. 허가사항변경

가. 코린화학(주)

- 소재지 변경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소우리 182-9로 본사 변경

나. (주)씨·에이·씨 무역

- 업종변경

동물용의료용구를 동물용의약품 수입업으로 변경

2. 제1차 수출촉진 협의회 개최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동물약품 업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수출촉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의 실무담당자를 모시고 제1차 수출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10월 2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였으며 협의결과에 따른 2차 협의회를 10월 17일 개최한다.

제1차 수출촉진협의회 결과안내

가. 제 목 : 제1차 수출촉진 협의회

나. 개최일자 : 1996년 10월 2일 오후 2시

다. 회의장소 : 협회회의실

라. 참석자 : 수출실적이 있는 회원사 실무 담당자

마. 회의결과 :

① 수출촉진 협의회 구성

10개업체 수출업무 실무담당자 ( 신일화학, 고려케미칼, 바이엘코리아, 대성미생물, 녹십자, 이글케미칼, 중앙케미칼, 제일화학, 중앙가축, 한국미생물연구소 )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부 참석을 요망하는 업체의 담당자 추가예정

② 수출시 과당경쟁 방지방안 검토

수출실적의 통계화 및 시장의 분석을 위하여 수출시 협회신고제 도입을 검토

③ 정보지 발간준비

업체들의 사례 및 정보제공을 통해 해외각국의 수출을 위한 자격요건 및 방법안내와 수출제로사항의 타결방법등 실무지침서 작성

④ 정례모임 개최

96년 10월부터 매월 3째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협회회의실에서 정례모임을 개최

⑤ 인터넷 홍보

협회의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회원사의 홈페이지와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광고

3. 약사감시 결과안내

광주광역시 약사감시결과 응기 및 포장의 표시사항 위반과 성분미달로 인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 31조에 의거 해당품목 제조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회원사의 표시사항 철저히재와 유통과정중 약효가 저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홍보하였다.

4. 가축질병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농림부에서는 '가축질병병성감정 실시요령'에 의거 아래의 5개 기관을 가축질병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구분	실시기관명	대표자
제8호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김태종
제9호	강원대학교 축산대학 수의학과	윤여성
제10호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정택
제11호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이재현
제12호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	강순선

5. 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개정의견 수렴

협회에서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 농림수산부 고시제1996-3호(96. 1. 13)]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하여

가. 후기사료에 사용이 가능한 무잔류 약품현황과 자료  
나. 관련 법조문 개정에 대한 의견과 사유  
다. 기타의견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6. 제21회 세계소동물 수의학대회 안내

대한수의사회에서는 10월 19일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세계소동물 수의학대회의 많은 참석을 유도키 위하여 단체 참관단 모집을 하고 있다.

이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수의사회(02 - 392 - 2526 : 김진숙)로 문의하면 된다.

7.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농촌진흥청은 돼지의 오제스키병과 세균성호흡기질병의 발생주의보를 9월 21일자로 발표하고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을 홍보하였다.

8. 동물용의약품 판매에 관한 질의회신

농림부에서는 김연섭(경북 경산시 옥산동)씨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가. 도매상에서 농장에 판매할 수 있는가?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동물약국이나 동물병원에 판매함이 원칙이나, 동물용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판매질서에 대하여 규정된 바 없음

나. 도매상 관리약사 이외의 자가 동물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 이외의 자가 동물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 다만, 관리약사 지도·감독하에 판매하는 행위는 가능할것임

다. 수의사를 고용, 동물병원을 개설 하였을 경우 수의사면허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용주가 동물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판매)토록 규정 한 것은 수의학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의사가 종전의 조제만을 할수있도록 하던 것을 완제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축농가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기위한것임. 따라서 동물용의약품 판매만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으며 동물진료가 주업무 이어야함.

라. 축협에서 개설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부재(등교로 인하여)주에 수의사 이외의 자가 동물약품을 판매할 경우 수의사면허 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의사가 부득이하게 부재중 일때는 수의사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동물병원을 관리할 관리수의사를 도지사에게 신고후 관리토록하여야 함, 수의사 부재중에 동물약품을 판매케한 경우 수의사면허대여로는 불가능

**9. 동물약품 안전사용홍보용 스티카 배포**  
 협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및 휴약기간 준수 등을 통하여 안전한 축산물생산을 독려기 위해 동물약품 안전사용 홍보용 스티카 12,800장(대형 9,600장, 소형 3,200장)을 제작하여 회원사 및 관련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10. 제조손모율 조사결과 안내**  
 수출용 동물약품제조를 위하여 수입한 원료 동물용의약품의 관세환급용 소요량 증명시 사용하는 제조손모율을 농림수산부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 통보하였다

제형	손모율 (%)
사료첨가제	2.0
산제	3.0
주사제	4.0
액제	3.0
연고제	5.0
과립제	7.0

**11. 동물약품 잔류방지 세부실천방안 홍보강화**  
 협회에서는 육류중 유해성물질 잔류방지 추진대책에 의하여 '동물약품 품질관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물약품 잔류방지를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수립하여 각분야별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중, 일부 품질관리 우수업체에서 항생·항균제중 표시사항(휴약기간 준수)과 주의사항을 확대하여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출고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유해물질 잔류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당업체의 철저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12. 회장단회의 개최**  
 협회 회장단은 농림부 가축위생과의 약무계장(이종원)과 96년 9월 16일 협회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의 여러현안들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13. 국가검정 절차관련 협의회개최**  
 통관전검정이 시행되고 있는 수입완제품의 국가검정품의 발체와 관련하여 김포세관인 경우 검정품을 국립동물검역소 또는 협회에서 발체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통합공고를 개정토록 검토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회를 수입완제품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9월 6일 개최하였다.

**14. 제3차 이사회개최**  
 협회는 제3차이사회를 9월 16일 협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다음의 안건들을 상정 처리하였다.

제1차 의안 : 대기업분회 부회장선임의 건  
 - 김영래부회장의 퇴임에 따라 황성수(우성양행 대표이사)를 부회장에 선임

제2차 의안 :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정개정  
 - 10월 1일부터 검정지원비를 사료첨가제와 경구용 산제에 대하여 변경승인  
 - 사료첨가제 : 20,000원/1,000Kg (1,000kg이상인 경우 매 1,000kg당 2,000원 추가)  
 - 경구용 산제 : 20,000원/500kg (500kg이상인 경우 매 500kg당 5,000원 추가)

기타 의안 : 제조업 허가 유지조건으로써 '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제도 운영과 사료첨가제 완제품 수입품목허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15. 부정·불공정 수출입관련 정보협조**  
 서울세관에서는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실행하고 있는 수출입신고제를 약용하여 일부 수출입업자가 부정·불공정무역행위를 자행하여 국민경제의 여러방면에 악영향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을 통해 조사·처리코자 유관단체 등에 협조요청을 해온 바, 우리 협회에서는 세관의 요청자료를 제공하며 적극 협조할 것을 회신 하였다.

**16. 동물용의약품 판매관리 철저**  
 최근 일부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소의 영업사원 또는 판매대리점 관계자들이 가축점염병이 발생할 경우 농가에 발생신고토록 권유하거나 가축이동제한등 방역상 필수적인 조치를 유도하지 아니하고, 자사제품을 과잉 홍보하여 지료를 유도한 후 지료가 없될 경우애야 가축위생시험소로 검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있어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제내성등 방역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농림부에서는 각 시·도를 통한 약사감시강화로 관련행위 발견시 관련법규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떠나갈 예정임을 알리고 각사별 영업사원 및 판매점에 대한 홍보·지도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7. 염화코린수입관련 공청회 개최**  
 미국 및 중공산 염화코린의 덩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 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무역위원회에서는 9월 23일 무역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업체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관련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최종결과는 금년 12월 이내 내려질 계획이다.

**18. 통합공고 개정**  
 통합공고가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83호(96. 10. 1)로 개정되어 관련된 주요내용을 안내한다.

- 가. 농림부장관에게 수입완제품의 품목허가를 득한 제품은 협회의 요건확인 후 수입(생물학적제제 및 항생물질제제 포함)
- 나.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의 수입시 발체 요청을 국립검역소 및 협회에도 신청가능하여 서울지역의 통관시 협회에서 발체후 타소장자가 가능케 됨
- 다. 일간무역 1996년 10월 1일자에 전문 수록